

이슬람국가의 타카풀보험(Takaful) 연구

The Study on Takaful in Islamic Countries

Jongwon Kim^{a,1}

^a Dept of Finance and Insurance, Seowon University, 377-3 Musimseoro, Seowongu, Cheonju, Chungbuk, Korea

ABSTRACT

A classical commercial insurance, which is used widely as the risk management methods for risk transferring and risk financing, includes the factors of interests, gambling and uncertainty, In 1985 Islamic Fiqc Academy declared that the classical commercial insurance violates the Islamic fundamental principles and beliefs, alteratively recommending a mutual insurance and takaful.

A basic principle of takaful is the mutual aid in the Islamic community. On the basis of mutual aid, takaful participants (insurance policyholder) establishes the takaful fund, which is cooperation fund by participant contribution. Takaful fund is separated from shareholders' fund, and the profit and loss of takaful fund are responsible for takaful policyholder. Ownership and operation right of takaful belong to the takaful participants. In takaful, takaful company takes a role of agent or management operator. Comparing to the classical insurance, takaful has the rights of profit dividend, voting of executives, access to accounting books etc. which are additional favors for business company or individuals as takaful participants. Business companies and individuals should consider to use takaful to transfer risk and to enjoy takaful's additional advantages.

리스크 전가와 리스크 재무기법으로 많이 활용되는 전통적인 상업보험은 이자, 도박성,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Islamic Fiqh Academy는 1985년 전통적 상업보험이 이슬람 교리에 어긋난다고 판결하고 금지하였으며 대체방안으로 상호보험이나 타카풀보험을 권고하였다.

타카풀보험제도의 기본운영원리는 이슬람 공동체의 상호부조이다. 타카풀보험회사는 타카풀보험펀드를 설정하여 타카풀보험참가자(보험계약자)들의 위험관리를 위한 공동의 펀드로 운용하며 이는 타카풀보험회사의 주주펀드와 분리되어 운영된다. 타카풀보험회사는 단순히 타카풀보험계약을 관리하고 타카풀보험펀드를 투자하는 대리인 또는 운영자(operator)의 역할을 할 뿐이다. 타카풀보험은 전통적인 보험과 달리 보험운영 이익배당권, 임원선임권, 회계장부열람권이 부여된다. 따라서 국내기업이나 개인들은 리스크전가목적 을 달성하는 한편 추가적인 혜택을 위하여 타카풀보험의 활용을 고려해야 한다.

KEYWORDS

Islam
mutual insurance
takaful
insurance
risk management

이슬람
상호보험
타카풀보험
보험
위험관리

© 2015 Korea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All rights reserved

* Corresponding author. Tel. 82-43-299-8624. Fax. 82-43-299-8620.
Email. jwkim627@hanmail.net

ARTICLE HISTORY
Recieved Mar. 06, 2015
Revised Mar. 06, 2015
Accepted Mar. 18, 2015

1. 서론

리스크 관리기법에는 크게 리스크의 회피, 통제(예방 및 감소), 분리, 전가 등 리스크 통제기법과 리스크의 자기보유, 캡티브, 보험을 통한 전가 등의 리스크 재무기법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리스크 관리기법 중에서 보험은 리스크 전가와 리스크 재무의 특성을 동시에 지닌 현대의 중요한 리스크관리 기법이다.

최근 중동지역에는 전통적인 상업보험과 별개로 이슬람 보험, 즉 타카풀보험(Takaful)이 탄생하여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에게는 중동시장에 건설업을 통한 활발한 진출이 있었고, 최근에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 등 다양한 경제협력이 지속되고 있는 중요한 시장이다.

세계의 이슬람 인구는 2010년 현재 약16억 2천만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23% 정도를 점유하는 기독교 다음의 두 번째로 큰 종교권이다(Wikipedia, 2015). 최근 이슬람금융은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다. 이슬람금융은 오일머니 축적 등으로 2000년대에 들어서 연간 15%이상 성장하면서 비이슬람권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향후 중장기적으로도 성장세가 전망되면서 국제금융의 지속가능한 축의 하나로 발돋움하고 있다(Choi. W. G., 2010)

타카풀보험(이슬람보험)은 이슬람금융에서 비교적 늦게 도입이 되었다. 이슬람은행이 1960년대에 도입이 되었으나 타카풀보험은 1980년대에 도입되어 다른 이슬람금융보다는 상대적으로 도입이 늦었다.

타카풀(takafu), 또는 타카풀보험이란 샤리아 율법(Shari'ah Law)에서 허용된 이슬람 보험이다. 아랍어 타카풀의 의미는 공동보장(joint guarantee) 또는 상호보장(to guarantee each other)이란 뜻으로 단어의 의미로는 상호보험(mutual insurance), 또는 미국의 우애조합(fraternal Societies)과 유사하다. 타카풀보험은 이슬람 공동체 각 구성원들의 기여금(아랍어: tabarru, 영어: contribution)¹⁾을 풀링(pooling)하고 이를 통하여 이슬람의 금기인 이자, 불확실성, 도박 등을 해소함으로써 이슬람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공동위험관리 수단으로 허용된 것이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시장인 하나인 중동지역에서 새롭게 탄생하여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이슬람의 타카풀보험에 관하여 탄생배경인 이슬람금전거래문화와 타카풀보험의 원리 및 운영 모델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는 향후 중동지역에 진출하는 우리나라의 기업이나 개인들이 타카풀보험을 이해하고 리스크관리 수단으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선행연구

이슬람금융과 관련하여 이슬람은행, 이슬람채권, 이슬람보험 등 여러 가지 이슬람금융을 다루는 포괄적인 연구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타카풀보험에 대한 선행연구는 아직까지 소수에 그치고 있다. 이슬람금융을 주제로 하는 연구에서도 이슬람보험인 타카풀보험은 간략히 언급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김선정(2011)은 이슬람보험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한국 보험산업의 진입을 위한 법적과제의 연구에서 미국 등 6개 국가의 타카풀보험에 관련된 입법사례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가 타카풀시장을 진입하기 위하여 진입의 필요성 여부, 타카풀 시장의 선택, 단독 또는 현지금융과의 합작을 통한 진출방식, 반이슬람정서 극복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상법과 보험업 등의 관련 규정의 적용여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슬람금융시장에서 후발주자인 우리나라로서 타카풀시장은 그 자체로서 큰 수익모델이 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으나 타카풀시장 진입 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으며 외국 시장에 진출하여 합작형태의 영업 또는 원도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법적 뒷받침은 일본의 예가 좋다고 하였다.

김영빈(2011)은 이슬람 문화를 간략히 설명하고, 그리고 이슬람 금융의 유형을 중심으로 하는 이슬람금융의 일반적인 개요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타카풀보험의 운영구조와 중동 및 동남아시아 주요국의 타카풀 운영사례 및 다국적 보험회사의 타카풀 진출 사례 등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의 타카풀보험시장 진출방안으로 국내 샤리아 학자 양성, 중동 자본운영에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서비스 방안 연구, 이슬람금융의 특수성을 감안한 법체계 보완, 이슬람금융 국제기관에의

1) 아랍어 Tabarru 는 기부, 선물, 기여 등의 의미이다. 영어 contribution은 기여, 기부 등으로 해석이 가능하나 기부는 일반적으로 기부자가 대가 또는 돌려받는 것이 없이 완전히 상대방에게 주는 것을 의미한다. 타카풀보험은 일정기간 운영 후에 이익이 발생 시는 이익의 분배를 받게 되는데 이런 특성으로 인하여 연구자는 contribution을 기부가 아닌 기여로 번역하였다.

합류, 국내 금융기관간의 이슬람정보 네트워크 형성 등을 제시하였다.

손태우 등(2014)은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관한 연구에서 풍부한 이슬람권 자본을 중심으로 막대한 규모의 해외투자 수요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자금유지에 못지않게 이슬람권 프로젝트 사업에 진출한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수익성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국내 금융기관들이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것은 이슬람 금융의 국내 도입이 제한된 현재 상황에서 이슬람 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차선택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국내 제조·건설업이 중동지역을 위시한 이슬람권에서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활용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국내 금융기관이 고부가가치의 해외 금융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려는 시도와 국내 금융기관이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의 긍정적인 상황을 설명하면서 프로젝트 수주 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기 위해서나 수주 후 필요 자금 확보 등을 위해서도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적극 연구하고 활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손태우 등(2014)은 타카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국내에 도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과정에서 연구의 도입과정으로 이슬람문화와 타카풀보험 모델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검토하였다. 단순히 석유자본에 대한 활용기회를 모색한 다면 합자 등의 방식을 통한 우리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이 더욱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일 것이라며 무슬림이 많지 않은 우리 실정상 타카풀 국내도입의 실효성은 그다지 커보이 않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타카풀이 운영면에서 회사주도가 아닌 보험계약자 주도적이라는 점은 민주적 기업경영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또한 타카풀의 국내도입과 관련 하여 타카풀의 법적 정의문제, 법적 형식에 관한 문제 등 법적으로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 있으니 주변국에 이점을 상실하지 않도록 타카풀에 대한 법적인 대비와 충분한 이해에 기초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에서는 타카풀보험의 생성배경인 이슬람금전거래문화와 타카풀보험의 운영모델의 포괄적인 설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국가나 보험회사 입장에서 타카풀보험시장의 진출 또는 국내도입을 위한 분석과 방안제시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이슬람금전거래 문화를 심도 있게 이해 위하여 이슬람의 꾸란 등을 이용하고, 타카풀보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보험기술적 측면과 타카풀보험약관을 활용하여 연구한다. 그리고 국가나 기업의 타카풀 시장 진출이나 국내도입 방안차원이 아닌 위험관리목적으로 타카풀보험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기업의 효익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3. 이슬람 금전거래 문화

3.1 이자(아랍어 : riba, 영어:interest) 금지

이슬람에서는 이자를 금지하고 있다. 이슬람에서는 이자는 사악한 것으로 정당한 노력 없이 타인의 재산을 착취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소액의 이자도 금지하고 있으며 다만 이자가 없는 금전거래는 허용되고 있다. 이 같은 이자 금지 내용은 꾸란의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을 공경하라. 만일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면 추구하는 이자를 포기하라.”(꾸란 2장 : 278절).

“믿는 신앙인들이여 이자를 거둬서 삼키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면 너희가 변성하리라.”(꾸란 3장 : 130절).

“그들은 금지된 이자를 거두어 갔으며 백성들의 자산을 부정하게 삼키었다. 하나님은 그들 불신자에게 고통스러운 벌을 준비하셨노라.”(꾸란 4장 : 161절).

이자금지와 관련된 예언자 무함마드 말씀도 하디스의 여러 곳에서 나타나 있다. 예언자는 “알면서도 이자를 받았다면 그것은 36회의 간음과 간통을 저지른 것보다 더 사악한 행위입니다”라고 하였다(Yusuf Al-Qardawi, 2011). 또한 예언자는 “망하게 하는 일곱 가지를 피하시오 라고 하였는데 이는 “쉬르크, 즉, 알라께서 어떤 것을 비유하는 행위. 마술, 정당한 이유 없이 알라께서 신성시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것, 이자를 취하는 것, 고아의 재산을 갈취하는 것, 전쟁터에서 도주하는 것, 정숙하고 믿는 여성을 중상 모략하는 것이지요.” 라고 하였다. 예언자의 또 다른 이자금지에 대한 말씀은 “이자와 성매매가

한 공동체에 성행하면 그 공동체의 백성들은 알라의 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등으로 꾸란에서와 같이 이자를 철저히 배척하고 있다.

이자수수를 금지한 것과 더불어 이자를 취급하는 업종도 금지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고리대금업의 금지이다. 다음은 꾸란 2장 275절에서 나오는 고리대금업 금지의 내용이다.

“고리대금업을 취하는 자들은 악마가 스치므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어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며 말하길 장사는 고리대금과 같도다라고 그들은 말하나 하나님께서는 장사는 허락하였으되 고리대금은 금지하셨노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고리대금업을 단념한 자는 지난 그의 과거가 용서될 것이며 그의 일은 하나님과 함께 하니라. 그러나 고리대금업으로 다시 돌아가는 자 그들은 불지옥의 동반자로서 그곳에서 영주 하리라.”(꾸란 2장 : 275절).

이자를 취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슬람에서는 대부자 이외에도 현금의 차입자, 대부거래를 기록하는 자, 이의 증인까지도 그 책임이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예언자는 “알라께서는 이자를 취급하는 자, 이자를 주는 자,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 계약에 증인이 되는 자 모두를 저주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Yusuf Al-Qardawi, 2011).

아랍어 “리바(riba)”는 증액이란 언어적 뜻에서 고리대금, 부당이익, 또는 사기성 상행위 등으로 풀이된다. 대출된 원금 외에 그 이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이자 행위도 포함된다. 리바란 불법적인 거래행위이다. 고리대금이 초래하는 빈익빈 부익부를 이슬람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고리대금 행위는 나태한 습성을 조장해 주며 이기적인 자기 본위로 사로잡히게 됨으로서 공동사회의 윤리와 도덕적 질서를 문란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자는 이슬람에서 꾸란과 하디스에서 철저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자를 취급하는 고리대금업도 금지된다. 심지어는 이자취급과 관련하여 대부자 및 차입자, 기록자, 증인 등 모든 관련자들을 최악 시 하며 이자를 금지하고 있다.

꾸란이 이자를 금지하는 이유는 공평성과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근거한 것이다. 자금을 차입하는 측은 대개가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자 부과는 빈부차를 심화시킨다. 실제로 일을 하지 않고 이자만 취하는 것은 불로소득으로 이는 성실한 근로를 저해하고 나태와 실업을 초래한다는 것이 이자를 금지하는 이유이다(Choi, Y. G. 2012).

전통적인 보험은 보험료를 계산하는 수리구조에서 이자가 부리 되는 특성과 저축성보험에서 이자가 부리 되어 지급되는 특성이 이자를 금지하는 이슬람 금전거래문화에 반한다.

3.2 불확실성(아랍어 : gharar, 영어:uncertainty) 금지

예언자 무함마드는 불확실하거나 교환 또는 인도될 상품의 분량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분쟁 또는 소송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거래를 금지하였다(Yusuf Al-Qardawi, 2011). 이와 관련하여 예언자는 종마와 낙타의 암컷은 새끼를 낳을 때까지는 매매를 금지하였는데 이는 새끼가 살아서 태어날지 또는 죽어서 태어날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또한 물속의 물고기와 하늘의 조류의 거래를 금지 시켰는데 이는 잡히기 전에는 내 것이 아니라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예언자는 익지 않은 과일이나 곡식의 발매기 매매를 금지하였는데 이는 병충해 또는 기후 등으로 인하여 과일이나 곡식의 수확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있으나 그로 인하여 분쟁이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거나 또는 그 위험이 작은 경우에는 경험과 관습에 의하여 매매가 허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당근, 양파, 무 같은 채소가 수확 이전에 흙속에 있는 경우나 오이나 수박 같은 채소도 수확 이전에 판매가 허용되는데 이는 위험이 낮은 생활의 필수품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이슬람에서는 불확실성은 미래에 분쟁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며, 또한 불확실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이익을 취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전통적인 보험상품의 매매에서 보험상품은 미래의 보험사고가 발생 할지 안할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한 보험상품을 통한 이익을 추구하고 있어 이슬람의 교리에 어긋난다.

3.3 도박(아랍어 : maysir, 영어 : gambling) 금지

도박은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금기되었다. 도박은 사람이 재산을 탕진하게 하고, 그리고 도박 자금의 마련이나 도박에 따른 갈등에 따라 발생하는 범죄의 원인이며, 도박에 중독되어 가족의 부양 의무를 포기하는 등 여러 사회적 병폐를 가져 오는 범죄행위이다. 이슬람에서도 도박의 여러 폐해 때문에 꾸란과 하디스 등에서 다음과 같이 도박을 금지하였다.

“믿는 자들이여 술과 도박과 우상숭배와 점술은 사탄이 행하는 불결한 것들이거늘 그것들을 피하라. 그러면 너희가 번성하리라.”(꾸란 5장 : 90절).

“사탄은 너희 가운데 적의와 증오를 유발시키려 하니 술과 도박으로써 하나님을 염원하고 예배하려 함을 방해하려 하도다. 너희는 단념하지 않겠느냐.”(꾸란 5장 : 91절).

그리하여 이슬람에서는 도박의 요소가 있는 제비뽑기나 복권 등은 금기이다. 전통적인 보험상품은 보험사고가 우연한 운에 의하여 발생하면 큰 보험금을 받으나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납입한 보험료를 잃게 되는데 이는 꾸란과 하디스에서 금지한 도박의 요소와 유사한 면이 있어서 전통적 보험은 이슬람세계의 무슬림에게는 비호감적인 것이다.

4. 전통적 보험의 비이슬람 요소의 해소

4.1 전통적 보험의 비이슬람 요소

전통적 보험에서의 비이슬람 요소는 우선 불확실성(아랍어 : gharar, 영어 : uncertainty)이다. 전통적 보험에서의 불확실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보험사고 발생의 불확실이다. 보험회사는 담보하는 보험사고가 미래에 우연히 발생하는 경우에만 손해액을 보상하는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보험계약자와 체결하는데 이때의 보상의 조건인 보험사고가 발생할지 안할지 그 여부가 불확실한 것이다. 또한 보험사고의 발생여부의 불확실이외에도 언제 발생할지는 시간상으로도 불확실하며 그리고 보상하는 손해의 보상금 지급규모가 역시 불확실하다.

전통적 보험에 있어서의 두 번째 비이슬람 요소는 도박성(아랍어 : maisir, 영어 : gambling)이다. 전통적 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는 적은 규모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사고 발생 시는 보험회사로부터 매우 큰 규모의 손해보상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전부 손해 보게 된다. 이러한 구조는 도박에서 우연히 당첨이 되면 큰돈을 벌고 당첨 되지 않으면 도박에 투기한 자금을 잃어버리게 되는 구조와 같아서 전통적인 보험이 이슬람 율법에 어긋난다고 보는 것이다.

전통적 보험에서의 세 번째 비이슬람적 요소는 이자(아랍어 : riba, 영어 : interest)이다. 전통적 보험에서는 여러 가지 이자 요소가 반영되어 있다. 우선 보험상품은 보험료가 보험기간 초기에 납입되는 것을 원칙으로 보험료를 계산한다. 이는 보험계약자들이 우선 보험료를 모두 납입하고 이를 모아 두었다가 사고 발생 시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보험상품을 만들기 때문이다. 보험사고는 보험기간 중 어느 시점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인가를 알 수 없어 보험기간 중에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평균적으로 보험기간의 중간시점에서 일시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들에 따라서 보험료는 보험기간 초기에 받아 보험기간 중간에 보험금으로 지급될 때까지 이자가 붙는 것을 고려하여 이자가 붙는 금액만큼 적게 받는다. 이렇듯 전통적 보험에서는 보험상품의 보험료 계산 구조상 기초에 납입된 보험료는 일정기간 이슬람에서 금지하는 이자가 붙는다.

이외도 전통적인 보험에서는 보험사고를 보상하는 위험부분이외에 저축부분이 결합되는 보험상품이 있다. 이 저축부분은 보험사고 발생과는 관련 없이 만기환급금, 또는 중간환급금 등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반환 되게 되는데 이 환급보험금을 보험 마케팅 목적으로 장수축하금, 결혼축하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기도 한다. 이러한 저축부분의 환급금에는 보험료 수취이후에 지급될 때 까지 이슬람에서 금지하는 이자가 붙게 된다.

전통적 보험의 네 번째 비이슬람 요소는 보험회사가 이슬람에서 금기하는 상품을 취급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납입 받은 보험료를 보험금으로 지급 될 때까지 막대한 자금을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때에 이슬람에서 금기로 하는 술, 도박, 마약, 돼지고기, 고리대금업 등을 생산, 중개, 유통, 판매하는 회사의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하게 되면 이는 이슬람 율법에 어긋난다.

4.2 비이슬람 요소의 해소

전통적 보험의 불확실성, 도박, 이자 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개인이 이러한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는 상업적인 보험상품을 보험회사에서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공동체의 위험대비 목적으로 공동자금화 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를 반영하여 개발된 보험이 타카풀보험이다.

타카풀보험에서는 비이슬람요소인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방법은 사고가 발생하면 타카풀보험참여자(계약자)의 기여금(보험료)을 적립해 놓은 타카풀보험펀드에서 사고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손해보상금 미지급에 따른 타카풀보험의 보험이익(언더라이팅 이익, *underwriting profit*)과 타카풀보험펀드의 투자수익을 타카풀보험 참여자에게 분배하는 것이다. 이로써 타카풀보험의 참여자는 사고 발생 시는 보험금을 받고, 사고 미발생시는 타카풀보험 펀드의 이익을 배당받게 되어 어떤 경우라도 타카풀보험 계약자는 돈을 받게 된다. 타카풀보험은 사고 발생의 불확실성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사고발생의 불확실성과 상관없이 상부상조의 운영원리에 근거하여 각 참가자의 사고발생여부의 상황에 따라 보상이나 운영이익을 받는다는 개념으로 비이슬람적 요소를 해소하는 것이다.

두 번째 비이슬람적 요소인 도박의 해결은 타카풀보험의 언더라이팅 이익과 타카풀보험펀드의 투자이익을 분배받음으로써 해결된다. 일반적 전통보험에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나 타카풀보험에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타카풀보험 펀드로부터 언더라이팅 이익과 투자이익의 자기분을 배분 받음으로서 전통적 보험의 도박 요소가 해소되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 비이슬람적 요소인 이자의 해결방안은 보험상품구조에 이자요소를 반영하지 않고 저축성상품의 이자를 부리하지 않는 것이다. 타카풀보험펀드에서 분배받는 언더라이팅 이익과 투자이익은 각 타카풀보험의 참여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시간 경과에 따른 무노동의 이자가 아니라 위험을 공동으로 대처하는 시스템의 운영 결과에 따른 이익과 손해를 분담하는 결과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통적 보험회사가 이슬람의 금기인 주류회사나 도박회사 등의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는 것은 타카풀보험 회사가 이슬람의 금기가 아닌 업종을 취급하는 회사의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만 투자하면 해소되게 된다.

5. 타카풀보험(Takaful Insurance)

5.1 타카풀보험의 운영

Takaful은 다른 부족 사람을 공격한 사람들이 피해를 당한 사람이나 그 후손들에게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방법으로서 고대 아랍부족에서 기원되었다. 이러한 관습은 후에 해상무역 등을 포함한 여러 분야까지 확대되었으며, 해상무역 참여자들은 항해 중에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자금을 기부하기도 하였다. 아랍부족의 전통적 관습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는 타카풀보험은 일반적으로 이슬람보험이라고도 불리는데 공동체의 상호부조에 기초하고 있다.

이슬람 율법학자들은 이슬람에 있어서의 타카풀보험은 반드시 분담책임, 공동보상, 공동관심, 단결 등을 포함하는 상호성과 협력이라는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Islamic Fiqh Academy는 1985년 12월 22일부터 28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에서 개최된 제2차 회의에서 전통적인 보험과 재보험을 주제로 모든 보험의 형태와 타입을 조사, 토론하고, 그리고 보험이 근거하고 있는 기본원칙과 목표, 목적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후에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ICMIF, 2013)

① 일반적으로 상업보험회사들에 의하여 사용되는 고정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상업보험의 계약은 계약을 무효로 하는 중요한 위험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이다. 따라서 샤리아에 따라 상업보험 계약은 금지된다(Haram).

② 이슬람 원칙에 따르는 대안계약은 자선(charity)과 상호부조(mutual aid)의 원칙에 근거하는 상호보험(mutual insurance) 계약이다.

③ Islamic Fiqh Academy는 Allah가 무슬림 공동체(Ummah)를 위하여 선택한 제도의 위반과 착취로부터 이슬람 경제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무슬림 국가들이 상호보험기관과 상호보험재보험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결정안에 함축된 타카풀보험의 기본적인 원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보험계약자들은 공동의 이익

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하며, 둘째는 보험계약자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기여금을 납부 하여야 한다. 셋째로는 공동체의 협동시스템에 따라서 손실금은 분담되어야 하고 책임이 분산되어야 하며, 넷째는 보험의 청약이나 보상에 있어서 불확실성(uncertainty)은 제거 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비용으로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야 한다.

타카풀보험은 Islamic Fiqh Academy 결정을 준수하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보험을 대체하는 위험관리의 방법으로 타카풀 보험계약자의 펀드와 타카풀보험회사의 주주펀드를 분리하는 운영형태이다. 즉 타카풀보험 계약자들이 위험을 공동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각 개인들의 분담금을 기여금(전통적 보험의 보험료에 해당한다.) 형태로 타카풀보험회사에 납입하고 이러한 기여금을 모아서 타카풀보험펀드를 만들고 여기에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타카풀보험펀드의 소유권과 운영권은 타카풀보험참가자가 소유하며 타카풀보험회사는 법적으로 아무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즉 타카풀보험펀드는 순수하게 무슬림들이 미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신들끼리 공동체를 형성하여 모금한 공동자금이며 그 결과로 타카풀보험펀드의 소유권과 운영권은 당연히 타카풀보험계약자가 갖는 것이다.

타카풀보험펀드의 운영결과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타카풀보험계약자들이 부담하며 그 결과로 타카풀보험펀드의 운영에 따른 이익과 손해를 타카풀보험계약자들이 분담하게 된다. 타카풀보험은 전통적인 주식회사 형태의 보험회사처럼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분담하는 것으로 이는 상호보험(mutual insurance)이나 협동보험(cooperative insurance)과 유사한 형태이다.

타카풀보험펀드가 있는 운영구조 하에서는 타카풀보험회사는 단순히 타카풀보험계약과 타카풀보험펀드의 운영자(operator)의 역할만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타카풀보험계약의 언더라이팅 이익이나 타카풀보험펀드의 투자이익의 분배를 받지 못한다. 손해도 원칙적으로 분담하지 않고 단순히 운영자로서의 판매비용, 마케팅 비용, 언더라이팅 비용, 손해사정비용 등의 운영비용과 수수료만 원칙적으로 받게 된다. 타카풀보험회사를 아랍어로 mudarib 라고 하는데 이는 대리인이라는 의미로 타카풀보험회사가 타카풀보험계약자를 위한 회사형 대리인 또는 회사형 운영자는 의미로 일부에서는 타카풀보험회사를 운영자(operator)라고 부르기도 한다.

타카풀보험계약자에 의하여 청구된 보험금은 타카풀보험펀드에서 지급된다. 미래의 보험금 지급을 위한 준비금과 다른 적립금을 적립한 이후에 남아 있는 잉여금은 타카풀보험회사가 아닌 타카풀보험펀드의 참여자인 보험계약자의 소유로 현금 배당금, 분담금, 또는 미래 기여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타카풀보험계약자에게 분배된다.

타카풀보험회사의 운영구조는 타카풀보험자금과 주주자금의 분리운영이라는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타카풀보험계약자의 이익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이는 고정이익보장은 이자를 받는 것과 유사하여 이슬람 교리의 이자금지를 위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타카풀보험은 이슬람의 샤리아에 따른 상보부조의 원칙에 따른 보험으로 전통적인 보험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전통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상품의 구입으로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대체한다. 즉, 약정된 보험료를 납입하는 대신 보험계약자는 약관에 규정된 위험에서 발생한 경제적 손해를 보험회사에 전가한다. 반면에 이슬람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들은 모든 위험을 상호공동적으로 분담하고 위험의 전가는 없다는 원리이다.

둘째는 전통적 보험회사는 이익추구가 회사의 경영목적이다. 그러나 타카풀보험회사의 경영 목적은 이슬람 공동체의 상호부조에 의한 위험관리이지 이익 추구가 아니다. 타카풀보험회사 주주는 타카풀보험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담 받을 권리가 없다. 다만 주주들이 제공한 업무서비스에 대하여 수수료와 운영비용을 청구할 권리를 갖고, 이외에도 주주들이 운영한 주주펀드의 투자수익을 배분받을 권리를 갖는다.

셋째는 전통적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는 회사의 임원 선거권을 갖지 않으며 회사의 회계에 대한 열람 권리를 갖지 않는다. 그러나 타카풀보험회사의 타카풀보험참여자는 임원 선거권과 회계열람권이 주어진다.

넷째는 타카풀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가 보험 만기 이전에 사망한다면, 보험금 수익자는 총 보험료, 보너스, 배당금, 그리고 납입보험료의 발생이익의 지분을 받을 권리를 갖으며 이외에도 납입된 타카풀보험계약자의 기여금에서 일정금액을 기부 받는다. 이것은 공동체사회에서 불행을 당한 사람을 위한 상호기부의 일환으로 행해진다. 이슬람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만기일에 생존한다면 보험계약자는 총 납입보험료와 납입보험료서 발생한 이익, 보너스, 보험회사의 정책에 따른 배당금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섯째는 전통보험에서는 보험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납입보험료에서 지급된다. 반면에 이슬람보험에

서는 보험대리인은 타카풀보험회사를 위하여 일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비용을 지급받는다.

여섯째는 전통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가 만기일에 생존하고 있다면 보험에서 부리된 이자는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된다. 만일 보험계약자가 만기일 이전에 사망한다면 보험에서 부리된 이자와 보험금 등의 수익금은 가족이외의 하인, 회사, 피수탁인, 파트너, 저당권자 등의 수익자에게도 지급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슬람보험에서는 타카풀보험계약의 언더라이팅 이익, 타카풀펀드의 투자이익 및 보험금 등의 수익금은 이슬람 공동체의 상부상조의 원리에 따라 피보험자나 또는 그들의 상속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타카풀보험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오는 기존의 상업적인 보험과의 차이는 리스크관리 목적으로 타카풀을 이용하려는 개인에게나 기업들에게 여러 가지 이점을 줄 수 있다. 첫째는 타카풀보험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재무구조나 언더라이팅실적이 우량한 타카풀보험회사인 경우에는 언더라이팅이익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이익배당을 기대할 수 있다. 이익배당이 있는 경우는 리스크관리목적의 개인이나 기업은 위험관리를 달성하는 한편 추가적인 재무적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재무건정성 지표와 손해율, 합산비용 등 언더라이팅 실적 지표를 활용하여 우량한 타카풀보험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타카풀보험에서는 임원선임권과 회계장부 열람권을 타카풀보험참가자가 갖는다. 따라서 타카풀보험회사의 경영에 직간접으로 참여하여 자기 자신의 이익증대를 위하여 노력할 수 있는 기회는 가질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회사의 경영의 투명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로는 타카풀보험에서는 언더라이팅 이익배당과 사망보험금이 피보험자나 또는 피보험자의 직계가족에게 지급되어 피보험자의 불행으로 인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남아있는 직계가족을 일차적으로 직접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타카풀보험의 용어에는 이슬람의 금전거래 문화가 많이 반영되어 있다. 리스크관리 목적의 기업이나 개인이 타카풀보험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슬람의 금전거래문화에 뿌리를 둔 타카풀보험의 용어의 이해가 필요하다(Table 1).

Table 1. Terminology of Takaful

영 어	타카풀 용어	한국어
Shari'ah-compliant insurance Life Insurance Non-Life (General) Insurance	Takaful Family Takaful General Takaful	타카풀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Bancassurance Reinsurance	Banctakaful Retakaful	방카슈랑스 재보험
Uncertainty Gambling Interest(Usury)	Gharar Maisir Riba	불확실성 도박 이자
Segregated Funds Insurance Company Policyholder Insurance Premiums Agency Agent	(Takaful) Window Operation Takaful Operator Contributor or Participant Contributions Wakalah Wakeel	(독립분리) 펀드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보험료 대리 대리인

2)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생명보험에서는 본인 및 부부, 혈족 등 가족관계와 채권자 등 경제적, 사회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당사자(가족, 하인, 회사, 피수탁인, 파트너, 저당권자 등)는 피보험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고 보험가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들은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이러한 가족관계, 경제적 및 사회적 관계를 보험계약의 요건으로 하지 않고 보험가입 대상자인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의 동의만 있으면 보험가입이 가능하며 동의가 없으면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상법 731조). 따라서 한국에서는 부부도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가입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자필서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타카풀보험은 공동체의 상호부조의 원리에 근거하여 피보험자 사망 시 원칙적으로 보험금 등 수익금을 1차적 경제적 피해자인 상속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5.2 타카풀보험의 운영 모델

(1) Mudharabah 모델

무다라바 모델에서는 다음의 Fig.1과 같이 타카풀보험 계약자는 자신들의 타카풀펀드에 기여금을 납입하고 타카풀보험회사는 타카풀보험펀드에 펀드투자기법을 투자함으로써 공동투자를 형성한다. 타카풀보험회사가 운영한 타카풀보험펀드 투자이익은 타카풀보험펀드에 귀속되며, 타카풀보험 및 리타카풀보험의 운영경비를 공제한 잉여금에서 타카풀보험계약자와 타카풀보험회사가 이익을 분배받게 된다. 타카풀보험펀드에 배분된 이익은 타카풀보험 계약자에게 배당되며, 타카풀보험회사로 배분된 이익은 주주에게 배당된다. 타카풀보험회사의 샤리아 위원회는 주주들에게 부과되는 이익과 비용의 분담비율에 대하여 각 연도별로 사전에 승인한다.

이러한 무다라바 모델의 운영구조는 아래의 Table 2의 KUWAIT의 GULF TAKAFUL보험회사의 상해타카풀보험 약관에서 명확히 나타난다. 이 상해타카풀보험의 약관의 전문에서는 타카풀보험계약자의 기여금 납부의무, 타카풀보험회사의 관리자 역할, 타카풀보험펀드와 타카풀보험회사의 투자이익분담 등 무다라바 모델의 기본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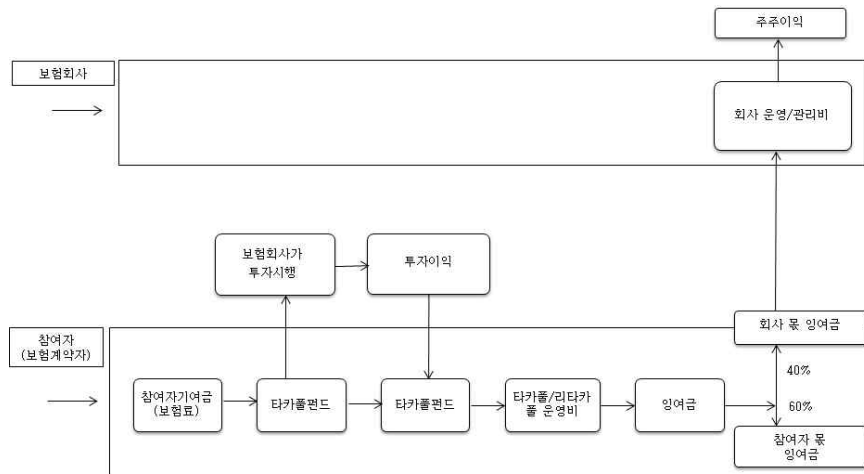


Fig.1. Mudharabah Model of Takaful

Table 2. Personal Accident policy of KUWAIT의 GULF TAKAFUL

Gulf Takaful Insurance Co. (Kuwait), PERSONAL ACCIDENT INSURANCE POLICY 전문
The Contributor, by accepting to deal with the Gulf Takaful Insurance Company (K.S.C.C.) (hereinafter called the "Company") will be contributing with other contributors therewith on the Takaful basis. The Company shall, be considered as a manager for the insurance system. And the Company shall invest the insurance contributions totally or partially on the basis of a speculation contract, against a prevailing share of the profits to the Company in its capacity as a speculator, to be determined by a general statement to be declared at the Company Head Office and its branches prior to each calendar yea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pany and the Contributor shall be determined specifically with regard to the latter's entitlement to his / their share of the surplus which shall be realized in the insurance operations account with the Company by virtue of the Bye-Laws enacted by the Company's Board of Directors, after the information of the necessary reserves for the Company and covering its administrative expenses.
This Insurance Policy has been issued by The Gulf Takaful Insurance Company (K.S.C.C.). The acceptance of this Policy carries an absolute and unconditional undertaking by the Contributor to agree and accept the distribution of net surplus of the Company at the end of each financial year according to the formula fixed by the Company and approved by its Shariah Committee.
이 보험의 기여자(보험계약자)는 Gulf Takaful 보험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와 거래하는 것을 승인 하는 것에 의하여 Takaful 원칙에 따라 다른 기여자들과 같이 기여하여야 한다. 회사는 이 보험제도를 위한 관리자로 고려된다. 그리고 회사는 투자자로서 각 회계연도이전에 본사나 지점에서 선언된 선언문의 투자계약에 따라 보험료 기여금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투자하고 이익을 분담한다.
회사와 기여자의 권리관계는 이사회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에 따라서 이 회사의 보험운영계정에서 회사의 적립금과 행정비용을 차감 후에 인식되는 잉여금에 대한 기여자의 권리에 따라 결정된다. 이 보험약관은 Gulf Takaful 보험회사에 의하여 발행되었다. 이 약관의 동의는 샤리아 위원회에 의하여 승인되고 회사의 의하여 결정된 공식에 따라서 각 사업연도 말의 회사의 순잉여금의 배당에 동의하고 수령하기 위하여 기여자에 의하여 엄격하고 무조건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2) Wakalah 모델

Wakalah 모델에서는 타카풀보험 계약자는 타카풀보험펀드의 경영, 관리, 및 투자의 책임을 지며 보험금 지급업무를 담당하는 대리인(Wakeel : agency)으로서 타카풀보험회사를 지정한다. 타카풀보험계약자는 타카풀보험회사의 업무 서비스에 대하여 타카풀보험계약자가 납입한 기여금의 일정부분(예 : 기여금의 40%)을 타카풀보험회사에 지급하게 되는데 이 대리인 비용은 타카풀보험회사의 샤리아 감독 위원회(Shariah Supervisory Board)의 자문에 따라 사전에 매년 일정하게 결정되며 대리인 비용은 실적과도 연동 된다. 타카풀보험회사는 대리인으로서의 서비스 수수료를 받는 것 이외에도 타카풀보험펀드의 투자운영에 투자기술을 투자하는 공동투자자로서 타카풀펀드의 투자이익의 일정부분을 무다라바 모델처럼 분배받기도 한다 (Fig. 2.). 이러한 Wakalah 모델에서의 타카풀보험회사는 업무서비스 대가로 받은 타카풀보험의 기여금의 일정부분을 타카풀보험회사의 주주를 위하여 별도로 관리하며 타카풀보험펀드의 투자이익 분담금등을 포함하여 주주에게 배당된다.

다음의 Table 3은 Takaful Brunei Keluarga Sdn Bhd, 보험회사의 타카풀 단체생명보험약관(Takaful Group Term Life Certificate)으로 Wakalah 모델의 보험약관이다. 이 약관에서는 타카풀 보험계약자의 기여금 납부의무, 타카풀보험회사의 대리인 지명 및 대리인 분담율, 샤리아 원칙에 준수에 의한 관리, 타카풀보험펀드 운영결과의 분담 등 Wakalah 모델의 요소들이 규정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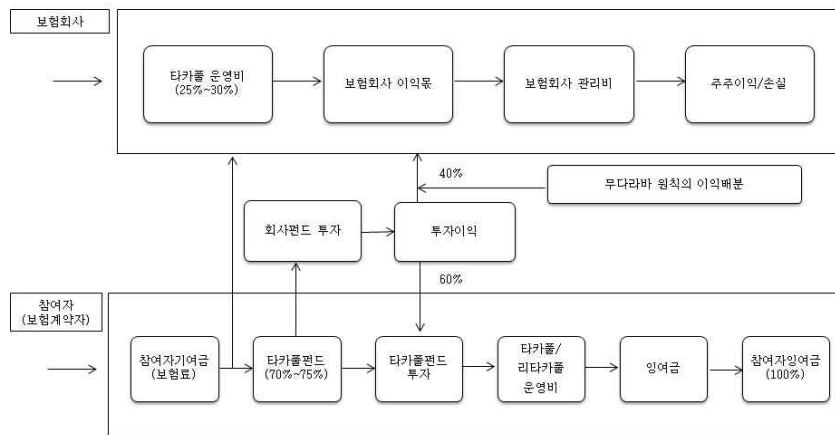


Fig.2. Wakalah Model of Takaful

Table 3. Group Term Life Policy of Takaful Brunei Keluarga Sdn Bhd

<p>Takaful Brunei Keluarga Sdn Bhd, Takaful Group Term Life Certificate</p> <p>17. TAKAFUL PRINCIPLES AND DISTRIBUTION OF UNDERWRITING SURPLUS. TABARRU’ Participant hereby entrusts to the Company, of which 60 % of the Takaful contribution will be donated as Tabarru’ into the Group Family Takaful Fund to help other eligible Participants under the takaful contract.</p> <p>WAKALAH The Participant hereby appoints the Company as Wakeel (agent) to administer, manage, invest and distribute the Takaful Fund to other Participants in times of misfortune subject always to the terms and conditions stated in the Takaful Certificate and Schedule. To this end, the Participant agrees to give apportions 40% of the Takaful contribution to the Company as Wakalah Fee for the aforementioned services.</p> <p>DISTRIBUTION OF UNDERWRITING SURPLUS The Participant also understands that the underwriting surplus arising from the said Fund, if any, shall be managed by the Company in a manner deemed fit by the Company and accordance to Shariah principles which shall give benefits to the Participant and the said Takaful Funds. As agreed and approved by the Shariah Advisory Body, the underwriting surplus will only be distributed to the renewed certificate at the Company and the Participant has not incurred any claim and/or received any compensation and/or benefit under the takaful contract whilst the same is in force, which are also subject to the discretion of the Company and the integrity of the Takaful Fund</p>

17. 타카풀원리와 언더라이팅 이익(보험운영이익)의 배분

TABARRU

참여자(보험계약자)는 기여금을 보험회사에 신탁하며, 타카풀 기여금의 55%는 이 타카풀 보험계약 하에 자격이 있는 참여자를 돕기 위하여 그룹가족 타카풀펀드에 Tabarru(기여금)로서 기부된다.

WAKALAH (대리, agency)

타카풀보험의 참여자는 타카풀 펀드를 경영하고, 관리하고, 투자하고, 이 타카풀 보험약관과 보상명세서에 규정된 보상조건에 따라서 불행에 당한 다른 참여자에게 보험금을 배분하기 위하여 Wakeel(대리인)으로써 보험회사를 지명한다. 이것으로 인하여 참여자는 회사의 위에서 언급한 서비스에 대하여 대리인으로써의 회사에 타카풀 기여금의 45%의 분담금을 주는 것을 동의한다.

언더라이팅 잉여금의 분배

이 타카풀보험의 참여자는 타카풀펀드로부터 발생하는 언더라이팅 잉여금을 참여자와 타카풀펀드에게 이익이 되는 샤리아원칙의 준수와 회사에 의하여 규정된 방법으로 회사에 의하여 관리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한다. 만일 참여자가 보험계약이 유효한 보험기간동안에 타카풀보험계약에서 보상이나 보험금을 받지 않았거나, 또는 보험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면 샤리아 자문단에 의하여 동의되고 승인 될 때에 언더라이팅 잉여금은 회사에서 갱신되는 계약에게 분배될 것이다. 이러한 배분은 타카풀 펀드의 완전성과 회사의 임의재량권 조건이다.

(3) Wakalah with Waqf 모델

Wakalah with Waqf 모델에서는 타카풀보험회사가 타카풀보험판매 초기에 일정금액을 기부하여 Waqf 펀드를 설정한다 (Fig. 3). 그리고 타카풀보험계약자는 타카풀보험 가입에 따른 기여금을 Waqf펀드에 납입한다. 최초의 Waqf 펀드의 설정 목적은 향후 타카풀보험펀드의 적자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최초로 설정된 Waqf 펀드금액과 타카풀보험계약자의 납입금의 합계금액에서 일정부분은 타카풀보험계약자를 위한 Waqf펀드로 배분되고, 그리고 남은 일정부분은 타카풀보험회사의 운영비를 위하여 배분된다. 타카풀보험회사는 타카풀보험계약자를 위해 배정받은 Waqf펀드를 투자운영하며 투자이익 중에서 무다라바 모델에서처럼 투자기술을 투자한 공동투자자로서 일정비율을 분배받게 되고 이는 주주에게 배분된다. 타카풀보험 계약자는 Waqf에서 분배받은 펀드금액의 투자이익 중 일정부분과 언더라이팅 이익에서 타카풀보험과 리타카풀보험의 운영비를 제외한 잉여금을 이익으로서 분배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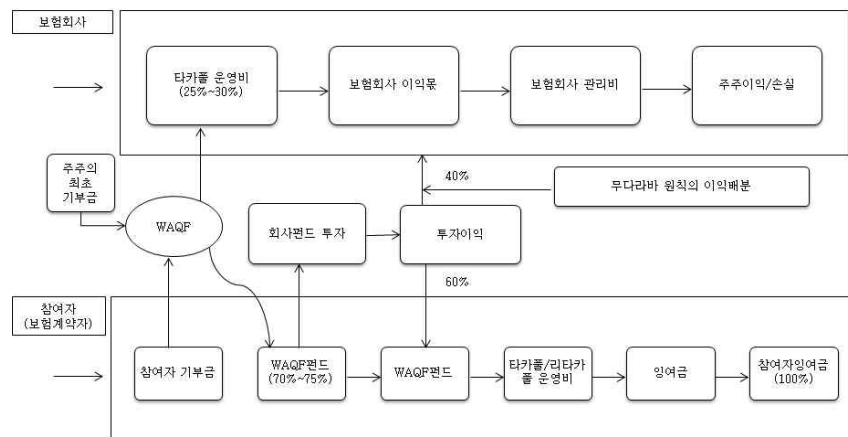


Fig.3. Wakalah with Waqf Model

이상과 같은 기본적 3개의 타카풀운영 모델은 원칙적으로 주주펀드와 타카풀보험펀드를 분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리고 타카풀보험회사가 주주펀드와 타카풀보험펀드를 운영하며 타카풀보험펀드의 투자이익에 대하여 일정지분을 운영에 대가로 배분받는 것 역시 비슷하다. 다만 타카풀보험회사가 타카풀보험펀드를 투자운영 시 펀드운영자 형식으로 참여하느냐 아니면 타카풀보험계약자의 대리인 형식으로 참가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며 기본적인 타카풀보험의 운용구조는 비슷하다. 그러나 Wakalah with Waqf 모델에서는 향후 타카풀보험펀드의 적자에 대비하기 위하여 최초의 Waqf 펀드를 설정하는데 이로 인하여 다른 두 개의 운용모델보다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Mudharabah 모델은 주로 말레이시아 등에서 운영되는

모델이고 Wakalah 모델은 중동지역에서 주로 운용되는 모델이다. 따라서 리스크관리 목적의 개인이나 기업은 진출하는 지역에서 가입이 가능한 모델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3개의 기본적인 타카풀보험 운용모델의 이용효익이 유사하지만 선택의 기회가 있다면 타카풀보험펀드의 적자에 대비하기 위하여 최초의 Waqf 펀드가 설정된 Wakalah with Waqf 모델은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6. 결론

다양한 리스크 관리기법 중에서 보험은 리스크 전가와 리스크 재무의 특성을 동시에 지닌 현대의 중요한 리스크관리 기법이다. 최근 중동지역에는 전통적인 상업보험과 별개로 이슬람 보험, 즉 타카풀보험(Takaful)이 탄생하여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슬람은 이자와 도박을 금지하고 불확실성이 포함된 금전 거래를 또한 금지한다. 전통적인 보험은 보험상품의 본질과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자, 도박,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산운영의 목적으로 주류, 도박 등을 취급하는 회사의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기도 한다. 이러한 것들은 이슬람에서 금지하는 것으로 샤리아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Islamic Fiqh Academy는 1985년 전통적 상업보험은 이슬람 교리에 어긋난다고 판결하고 이를 금지하였으며 대체방안으로 상호보험이나 타카풀보험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서 이슬람권에서 타카풀보험회사가 설립되어 무슬림에게 호응을 받고 있다.

타카풀보험제도의 기본운영원리는 이슬람 공동체의 상호부조이다. 타카풀보험회사는 타카풀보험펀드를 설정하여 타카풀보험참여자(계약자)들의 위험관리를 위한 공동의 펀드로서 운영하고 이를 타카풀보험회사의 주주의 펀드와 분리되어 운영한다. 타카풀펀드의 소유권 및 운영권은 본질적으로 타카풀보험계약자의 소유이며 그에 따라서 타카풀보험계약자들은 타카풀보험펀드의 이익과 손해를 책임지게 된다. 이때에 타카풀보험회사는 단순히 타카풀보험계약을 관리하고 타카풀보험펀드를 투자하는 운영자(operator) 또는 대리인의 역할을 할 뿐이다.

타카풀보험의 운영방법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의 관계의 특성에 따라 크게 Mudharabah(신탁금융) 모델과 Wakalah(대리인) 모델이 있다. Mudharabah 모델은 말레이시아 등에서 주로 운영되는 모델로 타카풀보험회사는 투자기술을 타카풀보험펀드에 투자하고 그에 따라 일정비율의 투자이익을 배분받는 것이 기본적인 구조이다.

Wakalah 모델은 중동지역에서 주로 운용되는 모델로 타카풀보험회사는 타카풀보험계약자들에게 보험계약관련 업무서비스를 제공하고 대리인으로서 수수료를 받는 것이 기본구조이다. 타카풀보험회사는 타카풀보험펀드에 투자기술을 투자하고 공동투자자로서 일정비율의 투자이익을 받으며 이것은 주주의 이익으로 분배된다. 이러한 기본모델은 Wakalah with Waqf 모델처럼 회사별로 지역별로 여러 형태도 변형되어 운영되기도 하는데 반드시 타카풀보험회의 샤리아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타카풀보험은 전통적인 보험과는 달리 상호보험 성격으로서 보험가입자는 보험운용이익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며 또한 회사의 임원을 선임 하는 권리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따라서 중동지역에 진출하는 기업이나 개인들은 리스크관리 목적을 달성하면서 한편으로는 언더라이팅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익 배당 등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무구조와 손해를 등이 우량한 타카풀보험회사를 이용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이슬람금전거래 문화를 심도 있게 이해 위하여 이슬람의 꾸란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타카풀보험의 이해를 높이 위하여 보험기술적 측면과 타카풀보험약관을 활용하여 연구하였다. 그리고 국가나 보험기업의 타카풀 시장 진출이나 국내도입방안차원이 아닌 위험관리목적으로 타카풀보험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기업의 효익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는 향후 중동지역에 진출하는 우리나라의 기업이나 개인들이 타카풀보험을 이해하고 리스크관리 수단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ferences

- Choi. W. G.(2010). "The present condition of Islamic finance ", Hana Financial Information (2010.4), pp1-17.
 Choi, Y. G. (2012), the story of my experiences of Islam, Paju, Hangilsa.
 General Insurance Association of Korea(2009), "Study on Takaful Insurance", Monthly Non-Insurance, pp57-74.

- Kim, S. J.(2011), " The rapid growth of Takaful insurance and the Legal challenge for the entry of Korea Insurance industry ", Administration and Law , Vol. 21, No. 1, pp511-562.
- Kim, Y. B.(2011), "Study on the research of actual condition of Islam Insurance: focused on the operating structure of Takaful", Master thesis of Kyung Hee School of Management in Kyung Hee University.
- Kong, I. J.(2006), Understanding Islamic Civilization, Seoul, Jeyoung Communication Co.
- Lee, H. S.(2009), Islamic culture, Paju, Salimbooks.
- Shon, S. H.(2011), "The present condition and How to make use of Islamic finance ", EXIM OVERSEAS ECONOMIC REVIEW(2011.10), pp4-22.
- Sohn, T.W., Kim, B.T., Park, H.T., "Study on Islamic Project Finance" Chonbuk Law Review Vol. 41 May 2014. pp. 217~245
- Sohn, T.W., Kim, B.T., Jeong, T. W., "Study on Domestic Implementation about Islamic Insurance(Takaful)", Law journal. Vol. 46, May 2014, pp.315-348
- Yusuf Al-Qardawi(2011), Halal & haram in Islam, Choi, Y.G.(translation), Seoul, Sechang Pub.
- Boubyan Takaful Insurance Co. (Kuwait). (2012.5). Home Takaful Plan. <http://www.boubyantakaful.com>
- Choi. Y. G.(Korean translation), Quran, <http://www.quran.or.kr/Korean%20Quran.pdf>
- Gulf Takaful Insurance Co. (Kuwait).(2007). PERSONAL ACCIDENT INSURANCE POLICY. <http://www.globalinv.net>
- ICMIF, <http://www.icmif.org>
- Institute of Islamic Banking and Insurance, <http://www.islamic-banking.com>
- Takaful Brunei Keluarga Sdn Bhd. (2012.8). Takaful Group Term Life Certificate. <http://www.takafulbrunei.com.bn>.
- Wikipedia, <http://en.wikipedia.org>